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예비비 지출 현황

- 지출결정액 : 6억 6천 4백만원
- 지출액 : 6억 6천 4백만원
- 이월액 : 6억 6천 4백만원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0백만원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663,692	663,691	663,691	-	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배상금등	663,692	663,691	663,691	-	1

II. 검토 및 의견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건으로, 6억6천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6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음.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예비비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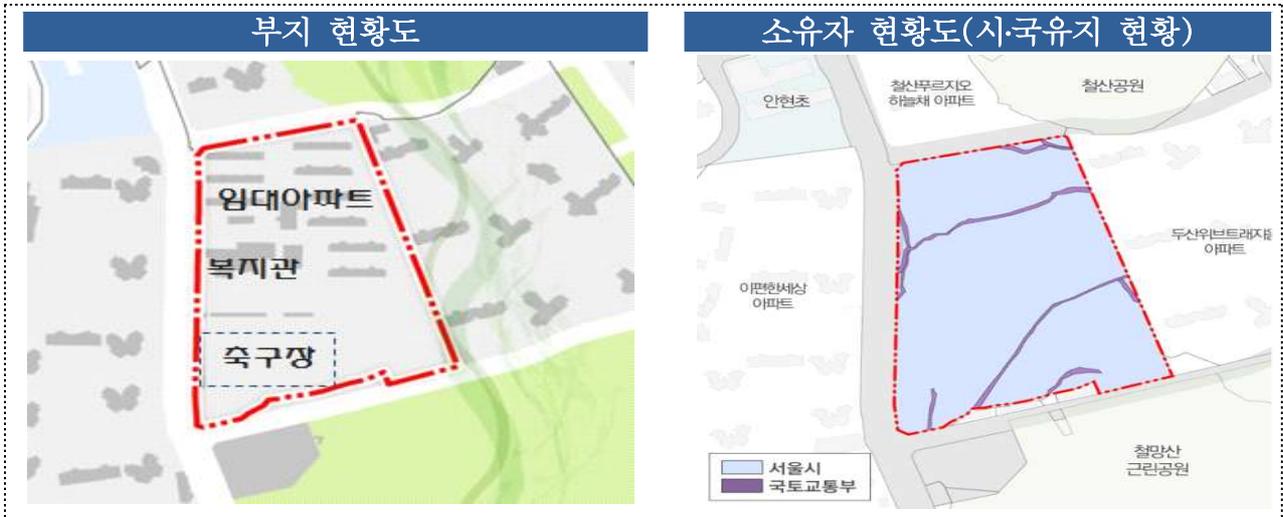
(단위: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결정일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배상금등	663,692,000	663,691,450	550	2018.6.7.

- 예비비 지출 사유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일부의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지 관리위임을 받은 광명시가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평생교육국은 높은 연체료(연 15%)를 고려하여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임(집행잔액 550원).

〈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부과(2018.5.23.) 개요 〉

- 대 상 :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2,660㎡(대지 1,525㎡ 하천, 구거 등 1,135㎡)
- 부과금액 : 663,691천원
 - 대지 617,671천원(사용료 514,725천원) / 하천 46,021천원(사용료 38,351천원)
- 부과기간 : 2015. 9. 18 ~ 2018. 3. 20(914일)
 - ※ 1차 변상금(사용료) 부과기간 : 2010.9.18.~2015.9.17
- 납부기한 : 2018. 6. 22



〈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현황 〉

-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일대
- 부지현황 : 대지 등 62,301㎡, 총 16필지
 - 사유지 : 59,641㎡, 8개 필지(대지), 전체면적 대비 약 96%
 - 국유지(국토부) : 2,660㎡, 8개 필지(대지5,하천2,구거1), 전체면적 대비 약 4%
- 도시계획 : 공공청사(도시계획시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시설폐쇄 : 2017.12.31일 (개관 : 1982.12.17)
 - 현재 운동장(축구장)만 금천구에 사무위임하여 한시적 운영 중

-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구로공단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 및 여성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86년 광명시에(가산디지털단지지역과 1정거장 간격) '서울시립 청소년·여성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노후한 시설에 과도한 재정투자(유지보수 및 리모델링)가 예상되어 본 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하여 G밸리(G-valley)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2013.10.10. 시장 현안업무지시)하기 위하여 매각계획(2013.1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 〉

-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개관:82.12.17)
- 시설규모 : 대지62,301㎡, 건물25,295㎡(복지관5,565㎡/아파트19,730㎡)
 - 근로청소년복지관 : 지하2층, 지상3층(교육·연수·상담시설) - 폐쇄
 -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 9개동 450세대 - 폐쇄
 - 기타 : 인조잔디 운동장, 풋살구장 등

-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폐지)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며, 도시계획변경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서울시는 다양한 개발안(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시하였으나, 광명시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방향(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바,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변상금 부과로 서울시를 압박하여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광명시는 본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5년 변상금을 부과(이하 '1차 변상금 부과')한바 있으며, 서울시는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 제기 후 3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금번 2018년 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이하 '2차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반환받을 계획으로 예비비로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임.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부과 경위 〉

〈 1차 변상금 관련 경위 〉

- 2013.12. 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 2015.1.~3. 광명시 변상금 부과(1,268백만원), 우리시 변상금 납부(예비비 사용)
- 2015. 7. 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변상금 취소 인용재결(심판청구 2015.3.30)
- 2015. 9.18.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통보(광명시→서울시)
- 2015.12.21.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청구(원고 서울시, 피고 광명시)
- 2016. 4.18.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요청(도시계획시설 폐지)
- 2016. 8.17. 1심 선고(수원지방법원) : 원고 승소
- 2016. 9.19. 광명시장 면담(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후속계획 수립 필요, 공동주택 불허)
- 2016.11.29. 2심 선고(서울고등법원) : 원고 패소
- 2017. 3.24. 공동주택 위주의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제안
- 2017. 4.24. 지구단위계획(안) 재검토 요청 (공동주택 불가, 지역내 학생수 포화, 교통 체증 유발을 이유로 공동주택 불허
- 2017. 4.27. 3심 선고(대법원) : 원고 승소, 파기환송
- 2017. 9. 1. 광명시 국장면담(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공동주택단지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청
- 2017. 9.14. 파기환송 선고(서울고등법원) : 원고 승소

〈 2차 변상금 관련 경위 〉

- 2017. 9.27. 지구단위계획 보완(안) 검토 요청
- 2017.10.10. 지구단위계획 보완(안) 불가 통보-체육·문화시설 등 저밀도 개발 희망
- 2018.3.20. 소송 이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18.4.1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무상 사용허가 신청
- 2018.5.23. 답변서 및 변상금 부과 통지(동 국유재산은 서울시에 무상귀속된 것이 아니며 사용료 감면·면제 대상도 아님)

-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과도한 변상금의 연체이자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패소 시에는 연체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예비비로 변상금을 선납부 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짐.

※ 1년 연체료(단순계산) = 663,692천원(변상금) × 15%(연체료) = 99,553,718천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¹⁾ 및 지방재정법²⁾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광명시가 재차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은 변상금 부과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예비비 사용의 요건인 변상금 부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1)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1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1970년대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정부와 무상사용 협의 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 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 지출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차 변상금 부과(2015년) 대상기간 : 2010.9.18. ~ 2015.9.17.(5년)

※ 2차 변상금 부과(2018년) 대상기간 : 2015.9.18. ~ 2018.3.20.(914일)

-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광명시는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또 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본 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연례적 반복적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광명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청소년복지관의 부지를 매각할 수 없고, 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와 서울시의 제소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만한 합의 또는 협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의 목적인 부지매각과 광명시의 목적인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타협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서울시의 소송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부수적으로,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2019.5.14.)에서 광명시에 패소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철저한 소송준비로 부당한 사안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	-----	-------	-----